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9. 9. 8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일부 조문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구청장은 상황에 따라 이용료, 할인 감면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” 를 삭제 함. (안 제8조제7항)
- 나. “입장권은 수탁자 혹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.” 를 “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.” 로 함. (안 제9조제1항)
- 다. “3년” 을 “2년” 으로 함. (안 제16조제2항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안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.

안 제16조제2항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8조(이용료 등) ①~⑥ (생략) ⑦ <u>구청장은 상황에 따라 이용료, 할인 감면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이용료 등) ①~⑥ (원안과 같음) <삭 제></p>
<p>제9조(입장권 매표) ① <u>입장권은 수탁자 혹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입장권 매표) ① <u>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6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 ② <u>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위탁계약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<u>2년</u>----- -----.</p>